

제42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8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4)
-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상정된 안건

- | | |
|--|----|
|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1 |
| 4.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 16 |

(14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법을 심사한 후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지난번 상법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3시에 다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4시02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 새로 오셨습니다.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법안심사1소위는 평소 제가 볼 때 제일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2일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1일 공청회 진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용 진술인은 집중투표제의 정관 배제 과정에서 3% 룰이 적용되므로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이 충분히 견제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도 과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제도는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제도이며 분리선출 대상 확대는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우찬 진술인은 비례 대표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기 감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분리선출되지 않는 감사위원의 수를 늘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준선 진술인은 집중투표제 도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충분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이미 1명 이상으로 충분히 감시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사 선임권과 재산 감독권의 제한을 두는 것은 현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성장을 해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윤태준 진술인은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핵심과제이며 집중투표제 도입 후 기업가치와 경영 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도입된 1명의 분리선출 제도는 대주주 등이 선임한 2명이 결속하면 사실상 무력화되어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분리선출 확대를 통하여 경영 견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시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위배 논란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고 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가 개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관련해서 주주제안 요건과 집중투표 실시 청구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주제안자 또한 경영 관여 시 일정 기간 주식 처분을 금지하여 책임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건설적인 내용의 제안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법제적으로는 제3항을 개정할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7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최소 2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선임 확대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은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11일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가 개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분리선출되지 않는 감사위원의 수를 늘려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전원을 분리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만을 인정하고 이사로서의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은 의결권을 집중하여 소수주주 측 이사의 이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사회 본연의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계에서는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배주주 소유 집중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지배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지배주주 외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표 대결 시 투표 전략 및 정보수집 능력 측면에서 지배주주 측이 정보에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주주 측 이사가 일부 선출되는 것을 넘어 이사회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를 전제로 한 조문도 함께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하여 이 안은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소수주주 측 감사위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계에서는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될 경우 소수주주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주주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같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3% 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제도는 1962년 상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제도이고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요소가 강화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높은 소유 집중도로 인해서 이사회를 지배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회사의 주주 구성, 소수주주 측 이사의 필요성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분리선출 방식이 2020년 12월에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설된 분리선출 방식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서영교 위원 특별히 입법적 차원이라고 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곧바로 합의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배숙 위원 아니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제가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논의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은 알지를 못합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의 주주 충실험의무 그것이 통과가 됐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초진장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로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세미나를 하고 굉장히 부산하더라고요.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여차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규정 하나를 개정하는 데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집중투표제 그리고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까지 계속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 해지펀드 여기에 대해서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펀드들의 특성상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 기업들과 국가 전체에, 기업 경쟁력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두 가지 쟁점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배숙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여기 전문위원 법안심사자료 마지막, 뒤에 보시면 집중투표제 관련해 가지고 외국 사례를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1940년대에 22개 주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주가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적은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이런 데서만 의무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본에서도 1950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974년에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거든요. 캐나다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기업들이 많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나라들인데,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하던 것을 폐지했던 이유,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 각 국가 간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처해 있는 여건 등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도입하는 회사의 비율은 굉장히 낮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사회라든지 감사의 감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기업의 특성상 전부 다 다르게 운영돼 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곽규택 위원** 법무부에서 검토를 안 하셨구나.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상사법무과 있지요, 법무부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곽규택 위원** 상법이라는 것도 이게 법무부 소관 법률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미국의 5개 주 정도, 애리조나·네브래스카 이런 데서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곽규택 위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실증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각 나라마다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법무부에서 이 법의 소관 부처라고 한다면…… 선진국에서도 있다가 없앤 제도인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곽규택 위원** 그러면 실증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폐지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상황하고는 당시에 어떤 면이 달랐다거나 이런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 그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의무화해서 시행한 결과 시차임기제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정보격차 차이 등으로 인해서 의무화했지만 집중투표제로 인한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의무화를 폐지하고 지금 몇 개 주에서만 의무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굳이 효과가 없는 집중투표 의무화 이것은 폐지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집중투표제 의무화 폐지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요. 별다른 효과는 없이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였다는 게 미국과 일본에서 실증된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대주주의 소유 집중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훨씬 더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곽규택 위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대주주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주식 보유의 소유분산기업 비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1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4위를 차지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식의 어떤 분포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결국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일부 집중투표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맡기기에는 지금 기업들에서 위낙 반대가 많잖아요. 이런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또 외국의 사례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집중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차관님,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이라든지 주주 이익에 반할 경우의 손배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또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보장 또 소비자 권리 보장 또 정보의 비대칭성 또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지요, 미국과 우리나라?

○법무부차관 이진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미국은 1940년에 도입한 제도를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도입조차 못 합니까? 일본이 1950년에 도입했는데 우리는 2025년도에…… 또 캐나다도 85년도에 도입한, 40년 전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다가 지금 다시 폐지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은 경제적 구조를 전혀 딴판으로 오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처럼 독점적 재벌의 지배구조가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특정 기업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유상증자, 순환출자 등의 협의로 강제 인수합병하다가 19개 협의 무죄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런 논의를 제가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충분히 도입해서 시행한 바가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940년에 미국에서 도입했는데 지금 다 폐지하고 5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다른 주에서는 이 집중투표제가 사실상 없어도 될 만큼 제도가 정착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2025년 지금 제도를 왜 도입하느냐고요? 저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1950년에 실시했는데 1974

년에 배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관에서 다 배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구요건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었는데 이제 100분의 1로 완화했는데다 정관에 의해서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강제하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차관님이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각 국가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주 권리 보호 분야 그리고 기업 이사회 효율성 분야 등에 대해서 총 69개 국가 중에 64위, 6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등도 저희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고려했던 사항 중의 하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도 여러 경제범죄가 뭐 예를 들면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중요 정보를 은폐한다든지 허위 호재를 공표한다든지 주요 주주를 매수한다든지 여러 대주주의 다수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로비가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계열사 등을 동원하는 조직 동원도 여러 사례가 있었고요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루어진 여러……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균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액주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보장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차라리 2025년도에 도입했다가 2030년에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5년 만에 그만큼 깨끗하게 자정작용이 있다면 저는 5년이라도 시행하고 폐지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폐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위원회의 위원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건 감사에서도 소수 감사의 참여 폭을 보장하는 것보다, 외부감사라 할지라도 저는 두 분의 의견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명보다는 2명이 오히려 의견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충족하는 데 의미 있다고 봐서 저는 두 제도가 정말 불필요해질 정도로…… 필요하다면 빨리 도입하고 불필요해진다면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 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체크 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집중투표제 관련해서 처리를 한다면 4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의견들이 없으셔서……

7페이지인데요, 3항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를 하면, 원래 있던 기존 4항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의무화로 바꾸면 정관 개정과 관련된 조항 자체가 불필요해집니다. 그래서 4항을 삭제하자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동의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장동혁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김용민 처리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관님, 하나님 체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토론 이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사례 얘기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22개 주에서 1940년대에 의무화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주가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의무화는 폐지됐지만 자율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현황 같은 것들은 혹시 확인된 것이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자료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기업이 자율적으로, 굳이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충분히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의무화까지 할 필요 없다 해서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장동혁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김용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희가 지금 토론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 가기가 어려운 것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의 충실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을 개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분리선출에 있어서 3% 률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정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3% 률이 지금 개정된 상태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한다면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올지 저희들은 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기업과 자본시장에 여러 가지 파장을 줄 텐데 그런 조항들이 개정되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지금이 상법 추가 개정 논의를 계속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개정된 상법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저희들이 이미 개정된 상법에 대해서 전혀 그 예후를 관찰하지 않고 지금 바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감사 분리선출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논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개정된 상법의 여러 결과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따로 대체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아니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이……

○**이성윤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대규모 상장사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인지 통계가 혹시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체 기업 중에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입한 기업이 약 4.89%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상장사 198개 중에서 20개 기업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지, 정관으로 배제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결국은 세상 어느 이치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대주주를 위해서 이사들이 봉사하고 회사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이마다 보니까 소액주주들로부터 끊임없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왔고 그래서 일부 개정을 했지만 정관으로 배제하도록 해 놓는 바람에 여전히 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험무와 더불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의 입장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취지에 공감하는데, 이사회 진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이사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취지에 공감한다 이 말은 찬성한다는 뜻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가 매번 상법 공청회 때, 상법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특히 권리보호가 미약했다. 그다음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정말 이사회의 전횡을 계속 방지하는 결과가 됐고 그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소액주주의 권리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또 확인차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시행일을 현재는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는 1년 후 시행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한 경과조치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따로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부칙안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조배숙 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발언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되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시에 공청회가 있으니 짧게 이어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차관님하고 차장님하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차관님.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대기업이 소액주주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엉뚱하게,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주의 펀드나 헤지펀드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냐, 원래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셨나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존에 경영권을 위협했던 사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례 케이스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분석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두 제도의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그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돈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수주주 이익이 보호되어야지요.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아까 3% 합산해 가지고 감사위원 선출하는 그것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이사의 주주 충실히의무도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법의 일반법으로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중견기업도 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펌이나 이런 데서, 기업들도 그렇고 세미나도 열고 그것 대비하느라고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좀 보고 그러고서 해도 될 텐데.....

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오늘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그것 소위에서 아까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8월 1일 날 우리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

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힘든 상황에 이것까지 이렇게 속도를 내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할 상황인가. 이 국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도 좋지만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균형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도 1980년대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삼켰지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런 기업사냥꾼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에 의해서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기업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주주 충실의무 등과 관련해서, 이사의 행동수칙 관련해서 지금 경제계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서도 기업 구조 개편 시에 이사의 행동수칙 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 사항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되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와 전자투표제 관련된 내용이었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은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의 내용이어서 논의의 궤적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도 이전에 법무부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경제민주화 3법 등 해서 이와 같은 제도의 논의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런 우려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논의는 충분히 해야지요. 하고, 지금 일차적으로 이사 충실의무로 이 첫 운을 뗐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합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시행된 이후의 어떤 경과라거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좀 그렇게 해서 대비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게 너무 굉장히 조급하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상법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논의도 많이 있었고 또 조배숙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 골든타임을 제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차관님? 주가가, 코스피가?

3200선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3200, 저희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한 2400, 2300 다 떨어졌다가 ‘우와, 3000까지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가 지금 3200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를 통과시켰고, 이제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 분리선출 이 부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기업들이 지난번 상법 통과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빨리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지요. 기업도 좋아하고 주주도 좋아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다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사에게 ‘그냥 주주의무에 충실하기만 해’라고 할 게 아니라 이사회 구성을 바르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투표제가? 그렇지요?

제가 여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행주식총수 1만 주가 있는데 A는 6000주를 가지고 있고 B는 4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1만 주 중에. 그러면 A·B·C 3명 중에 2명의 이사를 뽑아야 돼요. A·B·C 3명 중에 2명의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60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이사를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60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뽑을 수 있는 이사가 2명이니까 1만 20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4000주 갖고 있는 은 80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1만 20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A, B, C 중에 2개를 다 뽑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의결권이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한쪽이 1만 2000개, 한쪽이 8000개 갖고 있으면 뽑는 이사는 각각 하나 정도는 뽑아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고 균형도 맞추고 그리고 꼭 둘이 싸우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이익을 대표하면서…… 이 둘의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차관님께 물어볼게요.

한쪽 A라고 하는 곳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갑에 의해 뽑힌 이사 A가 있고 의결권 8000주를 가진 자에 의해서 뽑힌 이사 B가 있어요. A와 B가 둘이 뽑히기는 서로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달리 뽑혔지만 둘의 이익 추구는 어디에 가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당연히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활동을 해야 주주들의 이익도 극대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뽑히기는 의결권이 좀 더 많은 자에 의해서 1명이 뽑혔고 의결권이 조금 더 적은 자에 의해서 또 1명이 뽑혔지만 A, B라고 하는 두 이사가 추구하는 이익은 회사, 기업 전체의 이익 그리고 주주 전체의 이익, 그래서 둘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판단하는 데 의견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익이 대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소수, 아주 소수가 아닙니다, 이 소수들이 모이면 대주주만큼의 숫자가 된다 이럴 때는 그들도 집중투표를 통해서 이사를 뽑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집중투표제라고 보고.

저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을 코스피 3200에서 4000까지, 5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법적인 뒷

받침을 할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우선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왜? 안 가 본 길이잖아요. 집중투표제는 실제로는 저희가 법안을 일찌감치 IMF 때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세심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가 체크를 좀 해 보니까 우리 상법 개정 가지고 총 일곱 번의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지난번 공청회 포함해서 두 번의 공청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법 관련해서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한 후에 예정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2항, 3항도 결국에는 제1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라온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위에 2항, 3항까지 같이 올라온 취지가 결국은 1항, 2항, 3항을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1항 논의해 가지고 오늘 표결로 통과시키시면 2항, 3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2항, 3항도 논의를 해 보고……

○**소위원장 김용민**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장동혁 위원** 2항, 3항 논의 결과에 따라서 1항에 대한 찬성 여부, 반대 여부가 갈라질 것인데 2항, 3항에 대한 논의 없이 1항만 먼저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지금 1항만 여기서 표결 처리한다면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표결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의견 충분히 들었고……

○**장동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상법을 추후에 논의하자고 한 것은 2항, 3항을 포함해서 다른 보완적인 조항들을 추가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가자고 한 것인데, 지금 2항, 3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없이 갑자기 1항만 표결 처리한다고 하면 이로 인한 여러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아니면 1항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심사가 이미 일곱 번 있었고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고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동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럼 표결하실 겁니까?

(일부 위원 퇴장)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모두 나가셨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태 위원 저 잠깐,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요.

토론은 아닌데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의결했지만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상법 개정안 2·3항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 혹은 일괄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퇴장했는데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1항에 있는 상법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사실 입법하는 과정인데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거나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액주주분들의 또 소수주주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법을, 반대되는 입법을 같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처리하자는 건 사실 무용지물 상법으로 만들자는 의견 아닌가라는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앞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3시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15시06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표결이 있은 후에 아직까지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예정된 시간에 맞춰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회 안에 계시면 공청회장으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조직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검찰에도 적용시키겠다라는 주권자의 강력한 요구를 실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성준 교수님입니다.

다음, 서보학 교수님입니다.

다음, 양홍석 변호사님입니다.

끝으로 이광철 변호사님입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과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들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진술인도 와 계시고 그 진술인께서 먼저 발표를 하실 예정이니 지금 빨리 이 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각 진술인별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진술문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어 있으니 진술인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

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성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모성준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소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모성준입니다.

5년 전에 제가 맡게 된 사건 중에서 전세사기 범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신혼부부가 피해자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와달라던 피해자 부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보니까 세상에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너무나 부족하고 더뎠으며 그 결과 또한 수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만큼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면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무기력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검찰개혁 관련 법으로 인해서 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밝히는 의견은 법원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조직은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의 속도와 적응력 그리고 그 실행력에 있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더 이상 이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적 진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낸 사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충분한 법률적·정책적·기술적 수단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 다단계 사기 및 불법 인터넷 도박장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암구정역 인근에서 약물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죽인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례와 같이 별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야 아주 드물게 그 범죄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조직적 사기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수단만으로는 기업 형태의 범죄조직 내에서의 그 복잡한 업무 분담과 실행 행위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수익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체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나치게 많은 피해자와 공범이 관여된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

고 그마저도 상당한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조직의 구성과 조직, 역할 분담과 실행 행위, 범죄수익의 흐름과 은닉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적시에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정보의 상당 부분은 범죄조직 내부에 있는 공범이 아니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조직 내부의 공범들 입장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 내고 그 균열을 통해서 수사 및 범죄수익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내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범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플리바게닝과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소재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수익까지도 확보해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수괴를 제외한 공범들은 앞다투어 수사기관에 범죄조직의 조직과 구성, 범죄수익의 흐름과 은닉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검찰이 확보된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절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도형 씨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와 별개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절차와 파산절차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6월에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6조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금 등은 파산 재단에 환입되고 이는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그다음 단계까지는 이미 다 절차가 종결된 상황이고요. 채권신고까지도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산법원의 채권 확정 및 배당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 권도형에 대한 기소를 하지도 못하였고 추징보전 절차만을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도 전에 조속히 민사책임을 확정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과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는 실력의 차이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대형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권도형이 기를 쓰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했던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과 도구들이 마련되고 범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자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인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수사절차에서 조직범죄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가 검사를 거쳐 공판 단계로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환부 절차에서도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수사 단계를 거쳐 몰수, 손해배상액 확정 및 분배 절차로 자연스럽게 정보가 흘러가는 통로에 당연히 검사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판 과정이 전면적으로 분리된다면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피

해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들을 도입하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이 범죄기계로 진화를 마친 범죄조직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구에 빗대서 말하자면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조직을 상대로 아주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과 범죄조직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일방적인 경기는 실제 야구 경기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범죄조직이 만들어 내고 있는 점수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빼앗아 간 천문학적 범죄수익이고 범죄조직은 마지막 회인 9회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 경기를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게 된다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된다면 수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 그리고 파산절차로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가능한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모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한없이 딱한 처지에 놓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형 경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수많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시간을 7분으로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7분을 맞춰 주시고 아마 말씀하시다 보면 7분이 지났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7분이 지나면, 지금 한 8분 이상 지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7분 지나면 마무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즈음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토론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발표는 7분 이내에 최대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보학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서보학 제 진술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악의 검찰공화국을 경험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윤 정부와 그 행동대장 검찰은 나라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사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파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인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은 서로 분리되어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신분에 있는 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관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헌법 개정 시 한 국가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둘 수 없도록 하는 명시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정하여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소권 결합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소위 관련 사건이라는 고리를 통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소청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의 기소법정주의,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장치가 법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사권 없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기소권자가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전관 비리 등 사법 부패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초동수사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평계로 수사에 다시 개입해서 지배하는 제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절차, 검사의 기소권,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반하고 여전히 검사가 광범위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특히 세무, 관세, 노동, 경제, 공정거래, 금융, 주식, 산업재산 등 정치·경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소위 돈 되는 알짜 분야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 주도의 수사 및 전관예우의 부패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전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양 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법무부장관, 특히 검사 출신 장

관을 매개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고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현재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비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6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해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수청 직무에 다수 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 약화, 수사 지연, 책임 분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직제를 통일해야 합니다. 검사 중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직을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검사 약 이삼백 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인력은 500~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의 최초 개청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청 이후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인적 교류를 법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권 경합과 관련해서는 사건 가로채기, 사건 쇼핑 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경 간의 관계처럼 국수본이 입건하고 먼저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속 경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외환죄와 같이 일부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정리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속도입니다. 신중한 논의를 빙자한 시간 끌기는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률안의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 깁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3개월,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및 준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정확히 7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석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양홍석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견서에 있고요,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는 아시다시피 어떤 공권력 행사보다 제도적 완결성과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의 개폐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 궁정적인 전망이나 기대만으

로 함부로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충돌이나 충격,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치명적이거나 빈발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제거해야 새로운 절차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작동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마땅한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제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법 절차는 누군가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처리하지 않으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그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법적 중대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불편을 막천으로 또다시 사법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로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그래서 그야말로 추석 전에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적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형사소송법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위한 검사의 관여 또는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시된 수사의 종결은 검사를 거쳐서 하는 소위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사 개시는 1차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 종결은 검사가 하는 형태 그리고 수사 시작과 끝까지 1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적법성·적정성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다고 하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법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한 정책 기능, 통제·감시 기능 그리고 감사·감찰 기능, 수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통제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국가기관에 모아 둔다는 발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 놓고서 국가수사위원회 단계에서는 수사·기소를 통합해서 수사 중에도, 수사 후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열어 둔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에도 역행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나 관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금기시되고 있는데 이런 지휘나 관여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 관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국가수사위원회로 아웃소싱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대놓고 훼손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공무원들 외에 그 정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검찰을 조직 구성에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2의 검찰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검찰을 조직 구성에서 배제하게 되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처 구성조차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졸속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충돌이나 법안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작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수청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수청법이나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분리해서 중수청이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중수청 설치는 사실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발의하셨던 중수청법에는 몇 가지 이의 절차를 만드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복절차를 좀 세심하게 만드시려고 시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안을 보면 어디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건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법과도 충돌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런 상태로는 사실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복절차를 만드신 것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세심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소청법이나 박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공소청법 관련해서도 검찰청의 기능을 재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술인 양홍석 예.

굳이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자세히 담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법안들은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하실 때 여러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치명적인 결함은 제거한 상태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철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나오신 이광철 변호사님은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 하신 그 이광철 변호사님 맞으시지요?

○진술인 이광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잠깐, 질의응답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소위에서 법안 관련된 공청회를 하는데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인으로의 진술보다는 어떤 특정 정당을 대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쭉 지금 나열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광철 변호사님이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도 하시고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무엇보다도 특정 정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은 맡고 계시고 저는 이런 분은 참고인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사전에 진술인으로 누가 나오실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제기는 필요했으면 사전에 해 주셨어야지 이 자리에서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 부분만으로 진술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을 하셨고 조국혁신당도 이 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사안이지 진술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광철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7분 시간 범위 내에서 짧막하게 소명하고 말씀을……

○소위원장 김용민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질의응답은……

○곽규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오면 그때 필요하면 녹여서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발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진술 발표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네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이광철 진술인 입장이어도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견을 일정 정도 내지 않고는.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때 제가 국회 행안위원회였고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에게 많은 부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광철 진술인이 민정에 있을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정도라면 민정이 의미가 있다.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사람들에게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다니고 설명하고, 특히나 국회에서 저만이 아니라—제가 그때는 여당이었고요—그때 야당 의원들에게도 아마 여러 번 가서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실제로 민정 관계자 중에 가장 높이 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 김학의 관련한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김학의가 잘못됐지. 그래서 그 부분 전부 다,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았던 것을 그래도 법원이 전부 다 정리해 줘서 무죄로 나왔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어떻든 그 김학의를 잡으려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보았는데요 보면서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이다를 떠나서 우리가 오늘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권력기판에 엄청난 개혁을 가지고 오는데 과연 이 개혁이 국민과 권력,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로서 준비해 온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면서 같기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진술인으로서 진술을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소위원장 김용민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진술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꼭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표를 다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하셨는데 지금 불필요한 논란으로 굳이 발표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불필요한 논란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광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김용민 위원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화두에 관해서 한 사람의 시민인 제게 참고인 진술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국혁신당이 작년 8월 29일에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의 준비 과정에 조국혁신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으로 너무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반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달리 말하면 검찰의 폭주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폭주는 그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대입해 볼 때 그 본질이 검찰독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이재명 정부는 마침표를 찍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검찰개혁으로 나라의 역량이 소진되어서도, 더는 검찰개혁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갈등과 분열상이 노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국회에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그러한 염원을 안고 검찰개혁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소견은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안에 적절히 녹아 있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6쪽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에 참고가 조금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과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크게 1·2·3으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1은 전제조건 한 가지이고 2는 기조와 방향, 3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 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의 1, 전제조건 한 가지는 검찰의 탈권력기관화, 탈정치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앞서 여러 전문가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기소 절차에 있어서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구현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어서 범인이 반드시 처벌되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는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수사권이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바로 검찰의 탈정치화, 수사기관의 탈권력기관화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의 탈정치화는 선출 권력의 헌법상 지위를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의 체계하에서 주어진 공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직무수행의 본체가 좌우되지 않는 것,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탈정치화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바로 정치 군부 하나회와 국정원의 일탈의 모습들인데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룩했던 국정원의 개혁들이 지난 내란 국면에서 국정원의 내란 관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자면 이렇게 정치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정치와 절연한 바탕 위에서만이 검찰개혁은 비로소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권의 분리와 통제 강화 이것은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소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사권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결합되면서 검찰조직의 표적수사, 기우제수사 그리고 언론과 협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침해적 수사로 전개되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형태의 강력한 검찰권은 검찰 전관예우라는 폐해의 기반이 되었던 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목도한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 형사부 검사의 검경수사권, 지난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평가 그리고 실상 앞으로의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께서 질의 말씀을 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소권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소권의 경우에도 강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25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실제 대검은 기소권에 대한 본질적인 통제는 아니었지만 검찰총장 훈령으로 수사심의 위원회를 운영했었고, 실제로 작년 1월 15일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해서 검사가 이 단위에서 결정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검사의 지위 및 검찰청 지위 재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국가시스템에서 검사나 검찰청은 결코 법원이나 법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조인 양성의 통로가 법관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또 검찰청의 구조가 법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마치 검사가 법관인 것처럼 그리고 검찰이 법원

인 것처럼 하는 착시가 있고 이러한 착시는 검사를 스스로의 내재적 인식에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법관·법원과 동일한 존재여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의 면전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검사를 행정부 공무원으로 그리고 대검과 고검장을 없애고 검찰을 일반 행정부처의 기구로 동일시하게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차제에 저희 조국혁신당의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답변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난번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마무리를 부탁드리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마무리해 주시고 또 질의는 계속 그 다음번에 더 하실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질답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이광철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아까 진술인으로서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맞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안보다는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안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훨씬 더 가깝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4법을 성안하는 데 있어서 기여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술인은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듣고자 하는데 혹시 그런 지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중립적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전문적인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 검찰 또는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정치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이광철 기회를 주시면 짧막하게라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진술인 이광철 탈정치화라는 개념이 검찰에서 쓰는 것과 우리가 권력기관 검찰개혁에서 쓰는 부분의 용어가 상반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합니다.

탈정치화라는, 탈권력기관화라는 개념을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심지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지 법원과 같은 삼권분립의 독립된 기관도 아니거니와 그런 과정에서 행정부에 소속돼서 행정부 수반 아래에 있는 검찰청의 공무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서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하게 하겠다? 그것은 탈정치화가 아니고 정치를 넘어서서 선출 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탈정치화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진술인 이광철 제도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위원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지금까지 검찰이, 과거의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보면 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은 정치권력의—제가 볼 때는, 평가가 조금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하위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권력으로부터 이탈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검찰이 보인 행태는 검찰과 같이 정치권력과 영합하고 거기서 검찰의 힘을 키우고 법무부를 장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좋습니다. 인사권도 좋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만 분리하면 그것이 결국은 탈정치화가 될까요? 저는 정치검찰이 그냥 정치경찰로 바뀔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좋습니다마는, 이상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연 탈정치화가 되겠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이 오히려 저는 제 생각과 맞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한 건 국가수사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게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기관으로 수사권력을 나눠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이광철 저희 조국혁신당은 작년 8월 29일에 4법을 발의했고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법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위원님께서 잘 보셨다시피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법령은 없고요. 다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의 어떤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그 형사소송법 안에 있는 수사절차를 독자적인, 독립적인 법으로 분리해 내는 수사절차법 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습니다. 수사절차법까지는 저도……

그러면 지금 진술인께 여쭙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진술인께서, 특히 아까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이광철**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을 상세히 검토했다거나 또 그 법안 발의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좀 이해할 만한 기회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하는 기회에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저희 조국혁신당은 적어도 형사절차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조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사실은……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개입할게요.

이광철 진술인께서는 오늘 방금 지적한 것처럼 답변을 하실 때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지금 나오신 게 아니라 검찰개혁 4법, 민주당이 발의한 법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에 대해 전문가로서 진술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대표하시는 방식의 발언은 가능한 삼가시고 전문가로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광철** 잘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는, 물론 같이 논의하지만 빼대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인데 거기에는 결국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인으로 나오셔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아까 진술인으로서 저희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헌법 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이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형사소송법 체계가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서보학**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에게 헌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현재 결정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서보학** 예, 부분적인……

○**장동혁 위원**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검찰청법이 바뀌어서 일부 수사권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 형사소송법 규정들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냥 두어도 굴러갈까요?

○**진술인 서보학** 바꿔야지요.

○**장동혁 위원** 바꿔야지요?

○**진술인 서보학**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같이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바꿔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서보학 저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다 삭제를 하고요, 수사·기소 분리가 됨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은 3~6개월이면 충분히 저는 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을 분리해 가지고 기소권과 분리해서 다 쪼개 놓고 이렇게 대충 해도 이건 굴러갈 것이고 형사소송법도 대충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몇 개의 조문 삭제하고 나면 굴러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 놓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은 내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불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이제 숨바꼭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결국은 그거에 맞춰서 수사 조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면 수사절차를 어떻게 다 바꿀 것이고 그리고 수사절차를 바꾼다면 권리구제를 내가 받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의하고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수님들이 모여 앉아서 정리한다고 해도 3개월이면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소위하고 전체회의하고 본회의 올라가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하는데 3개월이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추석 전에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유예기간도 시행에 3개월만 주면 충분하다고 하는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그냥 결론 정해 놓고 이게 굴러 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러자는 것인지?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형사소송법,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를 쭉 이끌어 왔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국회 논의해서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소위, 다시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서 3개월 만에 개정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진술인 서보학 문제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일부 대통령령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검찰이 수사권,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엉망이 돼 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런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복절차도 다 마련이 돼 있고 모든 것이 제 절차대로 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불복절차에 대해……

○진술인 서보학 위원님이 굉장히 지금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혁 위원 불복절차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술인 서보학**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할 때……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교수님.

○**진술인 서보학** 이 절차가 아무 때나 무조건 영망으로 굴러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위원**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불복절차가 흡결이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가 흡결이 생긴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데 3개월이면……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해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다 뜯어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방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기간을 6개월을 두면 6개월 이내에 일종의 운용과 관련된 법—지금은 조직법을 만드는 관점이지요—운용과 관련된 법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통령실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용과 관련된 법체계들은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더 이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 중에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조직이 모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사전·사후에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홍석 진술인께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광철 진술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검토해 보지 못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셨는지는 궁금한데 모성준 교수님과 서보학 교수님께서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며 궁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성준 교수님 먼저……

○진술인 모성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아까…… 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사기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해도 그런 영역과 관련해서만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그런 전체 범죄들을 아우르는 형태의 무슨 기관이 있으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권한과 관련된 법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뭐였냐 그러면 우선 상당히 많은 권한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열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방문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부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 왔던 수사에 대한 통제 체계로는 너무나 강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시스템은 어떤 체계였느냐 그러면 경찰이 일을 하면 이것을 검찰이 싸서 보고 검찰이 일을 하면 1심 법원이 싸서 보고 1심 법원이 하면 2심 법원이 싸서 보고 그리고 대법원이 싸서 보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아무튼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시스템이었다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올려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권한은 끝까지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과의 비례관계 등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서보학 저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수청이 들어오면서 중수청에 대한 통제를 과연 어느 기관이 할 것인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법무부에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행안부에 두게 되면 자칫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든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 두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일종의 감시·감독을 하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설치가 제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이게 위원회 체제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국회가 관여를 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관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적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이런 규정을 쭉 봐도 주로 정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그다음에 감시·감찰 이런 권한을 갖는데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사건 종결이 되고 나서 사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여기다 열어 놓고 있는데 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각각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복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해서 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중수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에서도 수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때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거나 인권침해가 있게 되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저는 조금 차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무와 권한의 규정은 조금 손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양홍석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검토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새로 생기게 될 중수청,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굉장히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본연의 본질하고 위원회 체제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게 안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무상으로 변호를 실제적으로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수사위원회가 실제로 등장을 해 가지고 경찰 수사든 중수청 수사든 이런 곳에 나중에 감찰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에 이첩 같은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양홍석 제 생각에는 지금 법안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로 되어 있으니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수사 중에도 관여할 수 있고 수사 이후에도 관여할 수 있고요 단순히 적법성에 대한 통제기구도 아니고 적정성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수사 중에도, 수사 이후에도 관여해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그것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 내지는 수사기관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사실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이니까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형태의 구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고 그 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다루어야 될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다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수사와 관련해서 개입하거나 내지는

개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들이 좀 애매한 사건들은 국가수사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따라야 하는지 조차 지금 법률상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모든 수사기관의 상위 수사 총괄기구를 만드는 것이라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광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또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데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상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법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배제 그것하고 무슨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이광철 예.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예.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세 분이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진술인께서 보시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으신가요, 아니면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술인 이광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검토한, 상세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아까 조국혁신당 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냈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 11명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조직 가운데서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상임위원 9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 열한 분이 계신 조직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련의 형사사건이 대검 통계로 경찰 사건이 한 160만 건 정도 그다음에 검찰, 해경, 특사경까지 다 합하면 170만~18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위 진정 사건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170만~180만 건 되는 수사 수요를 11명의 상임위원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인원들이…… 지금 감사원도 전체 조직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요, 원장 포함해서 감사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지적들이 있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은 공수처의 운영에 관한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형소법에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라든지 고소 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부분도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현행 실정법하고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 다소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조직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관급 조직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발령되어지는 처분들은 다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데, 기존에 검사가 행정기관이지만 수사에 관해서 처분을 내렸던 건 일종의 준사법적 작용이 있다고 봐서 형사소송법에 준항고제도 같은 것들을 뒀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이 행정처분인데 준사법적 작용이라는 점에 대한 특별한 고려라든지 우리의 전체적인 불복 제도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제가 법안을 쭉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입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모성준 교수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죄, 다단계, 보이스피싱을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 제대로 수사가 가해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면 기존의 수사 체제를 너무 혼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의 기능을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는 찬성을 하시지만 보완수사권 정도라도 인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조금 명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술인 모성준 우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원칙에 기해서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검사……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검찰에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직접수사권이냐 보완수사권이냐?

○진술인 모성준 저는 직접수사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를 통해서 거의 패악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모성준 예.

○박균택 위원 그래서 그런 입법적인 배경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 모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체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않고 조서도 안 받고, 직접수사를 안 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직접수사권이 검찰에 있어야만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진술인 모성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는 독일형 모델로 해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 더 가까운데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튼 큰 규모의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애들은 다 암호화폐로 해서 범죄수익을 축적해 두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주장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만 검찰에게 유지되길 바라는 권한이 직접수사권이냐 보완수사권이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취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진술인 모성준** 그런데 그게 아무튼 올라왔을 때……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모성준** 몰수보전 이런 것을 하려고 올렸을 때 수사를 해야…… 지금 그게 막스 앤 텀블링으로 얘들이 하루에도 몇만 번씩 돌려 가지고 두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그 장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직접수사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위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점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술인 모성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는데요……

○**박균택 위원** 다음은 서보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수사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새로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어떤 조직과 기능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혹시 또 수사력이 약화돼서 국민 삶에 불편을 주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또 모성준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충분히 커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좀 작게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술인 서보학** 예, 기존 검찰의……

○**박균택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술인 서보학** 그러니까 기존 검찰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지부서 특수부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검사들이 한 이삼백 명 또 수사관이 한 1000명 내외가 거기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원이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 약 300명의 마약수사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약수사직 300명을 공소청이라는 기관에 남겨 놓을 것이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떼어 와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수사, 마약수사국을 만들든 마약수사부를 만들든 과를 만들든 이런 마약범죄 문제를 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 중수청이 발전하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에 보면 마약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안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경찰에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그건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신 부분입니까?

○**진술인 서보학** 저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균택 위원** 그러면 검찰청의 마약수사직은 검찰청에다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 걸까요?

○**진술인 서보학** 경찰 국수본도 기존에 마약수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 마약수사 인력을 굳이 아깝게 공소청에다 남겨 놓는 것보다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오게 해서……

○**진술인 서보학** 경찰청 국수본으로 가는 것은 안 되나요, 그분들이?

○**박균택 위원**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진술인 서보학** 그러니까 저는 중수청으로 보내서 그 기능을 하기보다는 경찰청 국수본으로 보내서 그분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박균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찰 계급장으로 갈아 줄까요?

○**진술인 서보학** 예, 저는……

○**박균택 위원** 그러면 마약범죄 수사관 중에 서기관급인 사람은 총경으로 계급장을 달아 줍니까? 수사관은 수사관으로 옮겨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에만 전념하게 해주는 그 방법도 어떨까 싶긴 한데요?

○**진술인 서보학** 하여튼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중수청이 지나치게 비대화된 수사기구가 되는 건 조금 저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 잘 읽었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점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불송치 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자들이 불송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심사를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할 것인가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구속 사건처럼 수사기간이 짧은 경우, 세 번째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요구하려면 쟁점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쟁점이나 법리가 좀 미묘하거나 또는 질문과 답변 사항이 가정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실수로 빠뜨린 것으면 좋은데 일부러 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의 타당성, 아니면 좀 더 보완이 돼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술인 이광철**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195조는 차제에 개정 시에 삭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라도 보완수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종래에 검사가 일원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사법경찰관들을 수직적으로 지휘했을 때,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보조자로 있을 때는 사실은 언제든지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벌

권 행사를 위해서 사건을 송치 지휘를 하면 되는 거여서 사실 국가형별권의 공백이 발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직적 지휘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서 검경 간의 수사의 접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협력과 또 상호 소통이었는데 사실은 이 제도의 설계와 정착 단계에서 매우 거친 검경 간의 상호 냉대, 반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수치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선의 변호사들은 굉장히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한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의 정착을 한시적으로라도 설정해서 부칙에 정해 두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다만 그조차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주면 검사의 수사인력이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형사부 검사 따로 있고 무슨 직접수사 인지부서의 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인력이 남게 되면 또 결국은 그 수사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해 왔던 많은 농간들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염격하게 요건을 설정하고 부칙에 한시적…… 그러니까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도 3년간 유예 규정을 부칙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통일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했듯이 그런 제도를 두어서 한시적으로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별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맞는 것이겠지요?

○**진술인 이광철** 그리고 보완수사권 인정하더라도 강제수사는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바로 마무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서…… 소위원장님이 잠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검찰개혁 법안을 하면서 형사소송절차 이 법을 손을 봐야 되는데 용산에 사법행정비서관……

○**소위원장 김용민** 사법제도……

○**조배숙 위원** 사법제도비서관을 뒤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거기서 법을 만들지는 않겠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법을 정부 법안으로 내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용산에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4법은

조직법이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이 확정되고 나면 조직 간에 운용하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은 확정된 조직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 학계 의견 그리고 정부의 의견 혹은 법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곽규택 위원 국회에서 해야지요, 위원장님. 그걸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합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들어보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소위원장 김용민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마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법이 완성되면 아마 각 당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당에서 그 법이 시행될 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준비 단위를 각자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지금 아마 진술인들께서는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시니 그것을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3~6개월 내에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느냐를 질문하셔서, 국회에서 어떻게 다 논의할 수 있겠느냐를 말씀하셔서 논의하는 단위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양홍석 변호사님, 이것을 제가 얼핏 봤는데요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국가수사위원회 조직의 성격이 뭔가요?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지요? 그러면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양홍석 예,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행정기관이지요. 그러면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사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술인 양홍석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사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어떤……

○진술인 양홍석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조배숙 위원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진술인 양홍석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제가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의 성격이 참 불분명하다. 이게 도대체 행정기관인지 그려면서도 동시에 또 준사법적인 기능을,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도 개입하고 수사 이후에도 적정성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격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2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입니다. 그것 보면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심의위가 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거지요?

○진술인 양홍석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하면 그건 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진술인 양홍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 우선하는 그런 형태의 위원회의 결정을, 그런 관념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위원회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또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행정기관인지 준사법기관인지 성격도 사실 불분명하고 또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 놓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런 부분이 무색할 만한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떤 논의 단계에서 출현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양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이게 중수청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서 저도 잘 못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은 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양 변호사님 생각에는 지금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양홍석 수사·기소 분리나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수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상당히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

입한다 치더라도 권한은 상당 부분 덜어 내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저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성이 대충 모양상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제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북서 검찰청의 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럴 것 같으면 국가수사위원회를 왜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생각 안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슬림한 형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만드나마나……

○조배숙 위원 그러면 업무 부하가 너무 많지요.

○진술인 양홍석 예,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합의제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합의제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회溯되거든요, 책임이 좀 회溯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준 교수님, 판사님이신데요. ‘빨대사회’라는 책도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은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대형 사기, 코인 사기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앞으로 이런 조직범죄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진술인 모성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요 권도형이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형사절차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끌어갈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가져갈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전에도 없었지만 여기 검찰 4법 이와 같은 법률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권도형과 같은 사람이 범죄인 인도로 저희한테 송환이 돼

왔을 때 미국처럼 우리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부도 금방 해 주고…… 권도형이 없을 때 환부를 해 줬습니다. 이미 다 그 절차가 끝난 게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 있고 송환되기 전에 이미 다 절차가 끝났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까지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의 형사사법의 변화와는 사뭇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안 됐지만 만약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진술인 모성준 그전 것도 안 됐지만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제발 그런 거를 고려해 주셔 가지고 피해자들한테도 피해 회복이 되는 이런 구조들을 함께 좀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나 또 코인, 다단계……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질 거고 피해자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진술인 모성준 예.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조직범죄를 파헤치려면 플리바케닝이나 중인 보호를 해서 공범들을 균열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박탈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술인 모성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기소하는 권한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그게 수사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사권을 이전처럼 그냥 100% 행사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약간만이라도 남겨져 있어야 이거를 플리바케닝도 할 수 있고 중인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플리바케닝하고 중인 보호를 경찰에 맡겨 두면 경찰은 할 수가 없는 게 경찰은 기소장이 넘어가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인 보호나 이게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려면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모성준 교수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사기를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 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실무편람을 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저희는 다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구

금 가능하고 또 사형선고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B1 병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모두 다 행사했던 권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예전에—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검찰의 권한 중에 들어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관할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수위로 다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은 했지만 최소한으로 사건관할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는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어찌 됐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명청은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그러면 과거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소위 살라미식으로 더 정교하게 잘, 방금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듯이 잘 잘라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전세사기피해자 특정법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중수청이 수사 못 하냐? 지금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권리가 없으면, 송치 의견 올릴 때도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자’ 이렇게 송치 의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수청이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보다 훨씬 약화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많으신지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

○진술인 모성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체계다 그러면 검찰청을 몇 개로 나누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러면요 원래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1건씩 접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 우리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1건씩 접수를 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서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이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좀 다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많아도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을 어떻게 쪼개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일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설계가 돼야 되고, 혹시 그게 이전에 경찰하고 검찰

을 갈라놨더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쪼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 본 사람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도 국수본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과도기적이라는 생각을,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직급 자체가 사실 안 맞긴 합니다. 너무 검찰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섞일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행안부에 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장관이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독립 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2차 검찰개혁이 있고 나서는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관들이 현재 법안은 1급부터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있다면 중수청·공소청 인사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그래서 법무부에 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에 넣어 주셔서 거기에 관한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서보학 위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상호 동일체 의식이 강하고 또 서로 영향력도 강하게 주고받지요, 실제로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마 동지

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보통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는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든 총리실에 두든 저는 법무부에서 일단 빼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양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국가수사위원회가 정말 소위 형사사건에 실무로 확 파고들면 과연 국가수사위원회가 개별 사건에까지 다 개입해서 할 수 있겠냐.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과거에 그냥 검사가 하면 됐던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각 수사관이 조정하지 않게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이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시고 또 국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국수위를 만약 배제한다면 수사기관과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진술인 양홍석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런 수사권 경합이나 충돌 상황이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조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해 주신 공소청법을 보더라도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정도에 수사관할조정위원회 같은 형태의, 이름은 뭐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좀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위원 짧게 하나만.

○소위원장 김용민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원래는 1차 검찰개혁 되기 전에, 소위 수사기관이 다변화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고 수사지휘권까지 다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갖고 와 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 공수처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진술인 양홍석 그런데 송치 전에는 그 논쟁이 있어 가지고, 경찰개혁위원회에 서보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권고할 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분리하게 되면 수사권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조정을 위해서 수사관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더 많아질 것이고 말씀하

신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의 권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국가기관들이나 특사경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오늘 네 분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수청을 설립하고 어디에 두느냐, 총리실에 두느냐 또는 법무부에 두느냐 또는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법안이 따로따로 제출돼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일단 법무부에서 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서보학 예.

○이성윤 위원 국민들께서 왜 법무부에서 떼 내서 행안부든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술인 서보학 수사조직이 법무부에 같이 있으면 저는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양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아마 중수청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 기관이 흩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현재 행안부장관은 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입니까, 하여튼 하위법령을 가지고 경찰국을 설치해서 사실상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경찰법상 치안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간섭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수사에 관여할 권한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실제로 수사활동에 장관이 관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독립성, 양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그럴 경우에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술인 서보학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현재 검사들이 검찰청에는 한 2300명, 2200명 좀 넘게 있고 수사관이 약 6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눌 경우에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 23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가고 또 수사관 6200명 정도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술인 서보학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에는 수사하는 검사는 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직제를 수사관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검사라는 직함을 버리고 수사관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소청으로 전환이 되면 상당수 경력 있는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까 6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이분들한테는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지만 사실상 주체는 검사들이고 검찰청 수사관들은 전부 다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수사청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독립해서 자기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6000명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수사조직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남는 수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검찰에는 수사과와 조사과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그분들은 중수청으로 갈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2300명 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직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사들은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직을 않고 계속 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진술인 서보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공소청에서 공소 기능을 강화하면서 뭔가 지금 남아 있는 검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들이 해 보면 실질적으로 수사인력, 직접수사 담당하는 검사는 약 350~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현재 1500~1700명 이 검사들이 과연 공소 쪽으로 됐을 때 공소유지, 기소만 담당해도 충분한가 이런 인력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검사들 현재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한 500명 이하, 350~500명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9월 이전에 조속히 법안을 통과하고 또 유예기간은 3~6개월 정도로 충분하다,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예기간은 3~6개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거나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진술인 서보학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혼자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면 이건 너무 길다. 그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검찰의 되치기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년은 너무 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대통령실에 사법제도비서관직이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되었을 때 동시에 함께 따라붙어야 될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력 문제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벌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

니까 국회에서 9월에 법안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 이것은 너무 늦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위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면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2020년에 6대 범죄로 줄었고 2022년에는 2대 범죄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설립될 중수청은 몇 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보학 그런데 사실 2대 범죄 그러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범죄라고 하면 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절도·사기·횡령·배임, 모든 사건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패나 경제범죄라는 게 결코 적은 수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대하고 복잡한 이런 경제사건에 집중해서 기존 특수부 수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범죄로 좀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서 설립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령에다가 수사 범위를, 수사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법률로써 수사대상 범죄를 정해야 되는데 또 일정 부분 법률로 다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보학 저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의 범죄명과 조항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많으면 그것을 별표 형식이라도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수사를 못 하면 그러면 범죄 대응을 안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패·경제 범죄 그다음에 거기도 특수부가 있고 광역수사대 이런 체제가 있어서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중수청이 해야 될 특별한 사건만 법에 제한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이광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 이것 되게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이 이른바 준사법기관이라는 말로 자기들의 권한이랄까요, 권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가치 없이 수사를 해 왔고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난 수사 압박을 받았고 또 실제로 수사돼서 재판을 받았고 또 변호사님도 재판을 받았고 저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 검찰이 끊임없이 수사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이광철 예. 대체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기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마무리 좀……

○이성윤 위원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까지도 검사들이 법무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온갖 기관에 다 파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중수청 또는 공소청이 설립이 돼도 검사들의 파견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검사들이 도처에, 심지어 금감원까지 파견 감으로써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또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12·3 내란까지도 이어졌는데 검사들의 파견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가요?

○진술인 이광철 저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파견을 법으로 금지하면 되고, 실제로 과거에는 검찰청법에 대통령비서실에 검사가 갈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사직하고 가는 그런 편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퇴직 후 일정 기간은 갈 수 없고 또 대통령비서실을 그만둔 다음에 일정 기간은 경력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을 못 갔던 것처럼 법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법무부의 검사는 어떻게 충원을……

○진술인 이광철 법무부 검사의 충원에 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둔 바도 있는데, 저는 탈검찰화가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의 파견도 법무부 파견조차 금지를 시켜서 법무부가 법무부 고유의……

지금 시간의 구애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법무 행정 가운데서는 검사사무 말고 오히려, 지금 법무부의 영문 명칭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누가 과연 법무부를 정의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지고 검사들의 시각으로 인권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출입국 사무라든지 교정까지도 다 지금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파견도 법으로 금지시키고, 다만 검사가 수행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좀 선별하고 그분들을 양성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끝내면 좋겠네요.

○곽규택 위원 저 손 들었는데요.

○서영교 위원 또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더 추가로 하실 겁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서보학 교수님께 질문할게요.

아니, 검찰들이 그렇게 서슬 펴했는데, 그렇잖아요? 서슬 펴했는데 지금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서보학 예.

○서영교 위원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아까 다른 진술인 얘기처럼 현장에 정말 어렵게 지내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거대한 범죄 사기…… 이들을 범죄로부터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진술인 서보학 예.

○서영교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잘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달리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그런데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서보학 잡기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잡기 어렵다고 경찰은 얘기하는데 잡아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잡아 와야 되잖아요. 중국에 있는데 왜 못 잡아 오지요? 못 잡아 올 이유가 없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경찰에 조직을 만들어서 가서 잡아 오게 하면 되고 인터폴을 통해서 잡아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할 때 그 일을 계속 제기해서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에 가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딥페이크를 당했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막 해서 텔레그램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 딥페이크를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이 크게 터져서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잡을 수 있는 피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그래도 1000여 명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권력자가 관심을 어디에 갖고 있고 누구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기관에 그 일을 하게끔 역량도 주고 힘도 주고 예산도 주고 격려도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검찰개혁이 그 일들도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자 많이 내게 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고리대금업자들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그냥 만연하잖아요. 그것 잡는 일을 그동안 검찰이 해 왔어야 되고 경찰들이 해 왔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도 격려하고 싶고요. 더 잘하게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다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검찰개혁으로 떠들썩한데 검찰개혁으로 떠들썩한 이유가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정치검찰들과 이들이 저질러 놓은 아주 나쁜 패악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직 개혁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쁜 짓 하고 패악질했던 그자들은 슬금 슬금 다 살아 있어요. 그것 어떡하지요? 이것 개혁해 가지고 조직 분리하면 그들이 처벌 됩니까? 그렇게 했어도……

저는 그냥 조금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저는 윤석열과 그 검찰과……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패악질했던 검찰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제기해 왔던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처벌들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조직은 개혁되고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은,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갑니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이름 가지고. 그리고 그 정권에 또다시 들어간

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든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저희들이 만든 검찰개혁 안을 여러분께 여쭤 보는 거니까, 이 법안을 해 나가되 양 날개로 민생을 지켜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낸 그 주범들을 찾아서 처벌해야지 이게 정리되지, 권한도 가졌는데 저는 정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날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이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국수본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하고 중첩되거나 이런 일 없나요, 수사 놓고?

○진술인 서보학 아마 앞으로 수사 경합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은요?

○진술인 서보학 지금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진술인 서보학 예.

○서영교 위원 지금도 있어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고 오히려 수사를 더 열심히, 아까 모 교수님 얘기하듯이 그런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경제와 부패, 마약 등등 잡으려고 하는 수사는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정리돼 가는 과정은 법무부장관도 있고 행안부장관도 있고 국수본부장도 있고, 그 장들이 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경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든 국가수사위원회는 저도 좀 새로운, 안 가 본 길이라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걸 검토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진술인 서보학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진술인 서보학 국수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과 우려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종 제도를 설계하셨으면 좋겠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저는 아마 이런 점에서 도입이 고려된 것 같아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하고 관련해서 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직접 경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하수인 비슷하게 일을 해 왔다 그동안 이런 비판……

○서영교 위원 그래서 경찰위원회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술인 서보학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실질화시켜서 외부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좀 차단하고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경찰 정책을 검토하고 지휘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국가수사위원회도,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으로 이런 수사기관들을 감시·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완충장치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것도 구성 자체가 위원회 형식이고 국회가 그 구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궁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행안위원장 하면서 그때 경찰위원회도 보았으니까요. 저는 어떻든 경찰위원회 때문에 국수본이 독립적인가? 국수본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잖아요. 국수본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국수본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면서 공소청은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의 독립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담보하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까? 중수청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확실히 수사를 힘 있게 잘할 수 있게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정치검찰들이 확실하게 단죄가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중수청은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만큼—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위상이 높아져서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혼신적으로 할 사람들이 가야 되고 중수청의 수사와 국수본의 수사가 영역이 조금씩은 나눠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하는 이 검찰개혁법의 그림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든 검찰의 권한을 넘기면서 만들어 간다면, 그런데 대신 중수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수본에도 권한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만들어서 엉뚱한 짓거리 했듯이 행안부에 또 중수청을 넘기면 법무부는 권한이 너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법무부에 남는 건 공소청 하나가 남는 것 같고 그리고 행안부에는 너무 많은 게 들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서보학 공소청이 행사하는 기소권 자체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입니다. 외국에서 보면 검사들이 수사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거나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를 법대에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검사들이 수사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수사권을 놓으면 마치 엄청난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술인 서보학 기소권 자체가 너무나 막강하고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청이 법무부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지금부터는 한 바퀴가 다 돌아갔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저는 조금 실무적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배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제도를 바꿨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제가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건의 적체, 범죄수사의 장기화 이런 것은 수치로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 그리고 어떤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고

소인·고발인 이런 분들한테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검사의 수사권 축소 그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바꿀 때, 지금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는 게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수사개시를 하는 그런 1%의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진행하는 99%의 수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양홍석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구속사건이 있을 때 경찰에서 1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는데요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피의자가 여러 명이 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는 아주 복잡한 사건들은 경찰에서 10일 동안의 구속수사기간 동안에 도저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 검찰에서 정말 20일 동안에 수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겨우 구속된 그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완수사가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속돼서 온 사건, 경찰에서 10일 동안 수사를 다 못 해서 그냥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다시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완수사하라고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떻게든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으로서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하지 마라, 즉 인지수사를 하지 마라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수완박 이런 걸 거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실무에서 보실 때 지금 사건의 적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어주시고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특히 구속사건 중심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양홍석 2021년 이후에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로 상당수 사건이 지연되고 사건과 관련된 수사 품질이 저하됐다라는 평가가 아마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경찰이 못 해서도 아니고 검찰이 잘하다가 갑자기 업무를 방기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서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다시 올라오면 검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검사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사건 관리 측면에서도 단일한 사건으로 관리가 안 됐던 측면이 있고,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의 적시성이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나마 하고 있던 직접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전면적인 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책적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택해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속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경찰이 10일이고 검찰이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 구속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경찰에서 송치된 다음에 다시 검사가 그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그런데 아마 보완수사 요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직접수사를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치했던 신병을 다시 경찰로 인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구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수사절차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의견에 넣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찰, 검사의 구속기간이 현재 총 30일이니까요 그냥 2차에 한해서 경찰, 검찰 구분하지 않고 이걸 연장해서, 보완수사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연장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전제는 어쨌든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완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요구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구속력 있게 담보될 것이냐, 기간 내에 처리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 하신 거지요?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답변하고 싶으신데 근질근질하신 진술인들 계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이미 70년 된 논의입니다. 7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이 있겠지요.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사람이 설계하는 제도이니까.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안 하거나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9월 중에 수사·기소 분리는 법이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기관에 두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씩 서로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서보학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중수청은 행안부에 둬야 된다, 법무부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특히 이광철 변호사님께서는 조국혁신당 안에 관여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법무부에 두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반드시 고집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서보학 교수님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을 짧게,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돌아가면서 그 부분 입장을 조금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광철 국가권력의 남용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권력은 자기의 소임이 있어

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헌법상 국가기관 법정주의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있는 것이고 이런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경찰이 수사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 두자는 말씀들이 나왔지만 원래 경찰은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다만 경찰이 수사와 치안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조직을 70년 이상 운영해 왔던 것이고, 치안을 떼내고 고유한 수사 작용만 한다면 그것은 기소에 이르기 이전의 전 단계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사법 작용이고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두는 것이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 남용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없애는 데 주안을 둬야지 그런 국가운영, 국가조직을 창설하는 원리에 맞지 않게 행안부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또 그게 법안에 반영되었던 것 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탈검찰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도 매우 통제를 하고 또 저희는 수사본부를 쪼개 가지고 그 수사본부에 대한 중수청장의 지휘권도 현행 경찰청장이 국수본에 대해서 하는 통제처럼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설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기존에 윤석열 정권이나 그 이전에 국민의힘 정부 때는 법무부장관에 검사 출신만 다 임명됐습니다. 공소청장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할 것이고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중수청장을 당연히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려고 하겠지요, 정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냥 검사들 아닌가요, 다? 법무부가 검사로 하나가 된 통합된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중수청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차라리 수사·기소 분리하기 전인 기존 검찰은 특수부였는데 그것을 중수청으로 승격시켜 주는 잘못된 설계가 되는 것 아닐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 작용이니 법무부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 고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한국 현대사, 정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단 법무부는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짧막한 답변, 다른 분들도 답변 하셔야 되니까요.

○**진술인 이광철** 짧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있더라도 실제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사를 임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느냐하고 무관한 것이고 통치권자가 이것을 악용하려고 한다면 온갖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서, 심지어 윤석열은 계엄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조직의 창설은 원칙적으로 하고 차후에 제기되어지는 남용과 통제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더 여쭤봐야 되니까요.

○**진술인 양홍석** 저는 정책적으로 행안부에 두거나 법무부에 두거나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법무부에 두는 것이 사법경찰 기능의 일관된 법 집행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모성준 교수님 답변 듣고, 혹시 서보학 교수님 보충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모성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습니다만 중수청 처음 들었을 때 FBI에 대응하는 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보학 교수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진술인 서보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특징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한 것이 아니고 검사들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가지고 법무부가 일개 중앙부처 이상의 파워를 행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동안 여겨져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 폐해를 막고 기관 간에 서로 견제·균형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다시 법무부에 놓게 되면 저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을 고리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몸처럼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원칙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중수청을 만들었을 때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어디로 할 건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국가 수사본부와 중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중수청은 그중의 일부를 수사하는 개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중수청의 수사에 우선 관할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혹시 이광철 변호사님 생각 있으시면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광철** 위원장님의 질의 취지는 우선적 관할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현재 공수처에도 우선적 관할이 일부 인정되고 이첩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일단 일반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도의 진폭은 있겠지만 일반·특별법 관계처럼 특수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 기관 상호 간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양홍석** 저도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이상 어느 정도의 수사 우선권은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현재의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는 수사 범위 설정 방식이 기존의 검찰청법에 따른 6대 범죄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중대범죄를 설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금액의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보학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술인 서보학**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나 범죄가 굉

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6대 범죄, 8대 범죄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수사조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하고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강제수사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 뒤늦게 중수청에서 고소가 되든 고발이 되든 진정이 되든 해 가지고 사후에 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권을 넘겨라 이렇게 되면 저는 양 기관 간에 상당한 트러블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가로채기라든가 또는 사건쇼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중수청에 의한 수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쇼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면 우선권을 주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분야의 수사를 하도록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결국에 수사 관할의 문제 때문에 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아까 양홍석 변호사님도 만약에 할 거면 차라리 법무부에 두는 게 낫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런 수사 관할과 관련돼서 충돌하는 것을 조정해 주는 기관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 서보학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법에 그 원칙을 일단 넣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 또 정말 내란·외환죄처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은 국가 수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관할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마지막으로 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술인 모성준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혀 아는 게 없는데요.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전에 무슨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 대해서 정보 침탈 사건이 발생을 하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가 다—경찰까지 포함해서—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면 어려운 사건일 수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 문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쉽고 간편하고 생색이 나는 것을 먼저 하게 돼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은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어렵고 힘든 게 중요한, 아무튼 이 사안과 관련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렵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다른 분들보다 모성준 교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결단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직 판사이시니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모성준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복잡한 사건, 사기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

의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플리바게닝 등등을 포함해서 공범들을 찾아내고 수사의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진술인 모성준 예.

○소위원장 김용민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에 대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검찰의 큰 폐해였던 ‘누군가를 불어, 그러면 당신의 횡령 금액을 줄여 줄게. 당신 100억 횡령했는데 이 횡령한 것 어떤 공무원한테 뇌물 1억 줬다라고 불어, 그러면 횡령금을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여 줄게’ 이런 방식의 수사 관행들이 검찰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대안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인정 안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술인 모성준 소위원장님,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플리바겐은 미국식 모델이고요 플리바겐은 법원 판사의 최종적인 서명이 들어가야……

○소위원장 김용민 당연한데 우리 법에는 없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진술인 모성준 그래서 그런 절차로 진행해 보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되게 이상한 동영상 광고들이 좀 있습니다. 사기로 유도하는 듯한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넣어 가지고 돈의 흐름을 보고 애네들을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유일하게 있는 수사라고는 그 동영상을 보고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접수를 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냐면, 돈이 흘러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교수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접근을 말씀하시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진술인 모성준 죄송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로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 통제를 상당히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짬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해봐야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도 하고 공판도 진행하는 그런 예심판사는 프랑스에 있는

데……

○**소위원장 김용민** 저는 예심판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예 판결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판과 기소가 결합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요?

○**진술인 모성준**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우리 현대 사법 시스템은 여건이 안 되니까.

○**진술인 모성준** 예,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이 반론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술인 서보학** 반론은 아니고요. 저는 수사기관이 플리바케닝 권한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법원의 권한이고 수사하는 사람이 바케닝 권한을 갖게 되면 피의자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봐주고 ‘이건 자백하라’ 이랬기 때문에 버틸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의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이고 참고인 직접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또 바케닝을 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 낼 위험성이 크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플리바케닝 권한이라는 것은 절대 수사기관에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진짜 마지막 발언입니다. 짧게 1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진술인 모성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겐을 통해서 딱 수괴만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다 와 가지고 진술하고 적당한 형을 받고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요새 범죄조직들이 다 100명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명이나와 가지고 늘 다 재판을 받으면서 증언 거부하고 이런 상황들이 모든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재판이 늘어지고 늘어져 가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해결할 방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모성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와 같이 갈 수 있는 논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저희가 자주 그리고 많이 심사는 하겠지만 이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분명하게 지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전 의사일정 제1항 의결 시 위원회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안 형식이었다는 점을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곽규택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조배숙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출석 진술인

모성준(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교수)

양홍석(변호사)

이광철(변호사)